

 국토교통부	<h1>보도자료</h1>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보다 나은 정부
	배포일시	2018. 10. 5(금) 총 9매(본문 5, 붙임 4)	
담당 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 과장 백현식, 사무관 박형렬, 주무관 신성일 • ☎ (044) 201-3997, 4005
보도일시		2018년 10월 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7.(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화물차 유가보조금 째짜미 '철폐'...부정수급 근절한다

- 주유소 카드깡 적발 시 최대 5년간 거래정지 등 단속·처벌 강화 -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3대 과제 】

- ① (단속체계 전환) 화물차주 중심의 단속체계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 ② (단속·처벌 강화) 부정수급 유혹이 차단되도록 단속·처벌 기준 강화
- ③ (예방체계 구축)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 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계개편*('01.6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 환경보전을 위해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여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을 100:47:26('01.6월)에서 100:85:50('07.7월)로 조정

○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345.54원/ℓ, 197.97원/ℓ 을 지급단가*로 하여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세부내용 붙임1)

* 유종별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와 '01.6월 당시 유류세의 차액으로 산정

○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1.8조원의 유가 보조금이 지급** ('17년 기준)되고 있다.

* 유가보조금 대상 영업용 화물차(유종별, '17년 기준) : 경유 381,477대, LPG 13,483대

** 지급규모(조원) : ('01) 0.03 → ('06) 0.9 → ('11) 1.5 → ('16) 1.7 → ('17) 1.8

□ 그러나, '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부내용 붙임2)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BPR/ISP 수립 용역 보고서(교통안전공단, '17년)에 따르면 부정수급 금액은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정

○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연도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부정수급(건)	1,245	3,789	4,739	4,202	3,944	2,432	2,805	2,893
부정수급액(억원)	20	45	34	42	37	50	56	64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17년 적발 기준)>

구 분	금액(비율)	건 수	구 분	금액(비율)	건 수
①부풀려 결제	16억(25.1%)	269	⑤타 차량 주유	0.9억(1.4%)	205
②일괄결제	6억(9.5%)	834	⑥카드를 미말소 주유	0.4억(0.6%)	86
③수급자격 상실	3억(4.7%)	1,110	⑦이동판매 차량 주유	0.3억(0.5%)	4
④타 유종 주유	1억(1.6%)	117	⑧기타(불법 증차 등)	36억(56.6%)	268

□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8.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강화 및 신설	추진시기
단속체계 전환	관계기관 업무협조체계 부재	석유관리원과 업무협조체계 구축	'18.11월
	모든 주유소와 거래 가능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거래 제외	'19. 上
	1회 6개월, 2회 1년 거래정지	1회 3년, 2회 5년 거래정지	'19. 下
단속·처벌 강화	تون급별 일률적 탱크용량 적용	각각의 차량별 탱크용량으로 개선	'19.1월
	처분횟수 기준 지급정지	위반횟수 기준 지급정지	'19. 下
	의심거래 조치 관리체계 부재	의심거래 조치 관리 모니터링 도입	'19.1월
예방체계 구축	부정수급 행정처분 ○, 형벌 ×	부정수급 행정처분 ○, 형벌 ○	'18.11월
	무자격자 실시간 확인체계 부재	무자격자 보조금 자동정지체계 구축	'19.1월
	유가보조금 先지급 後조사 및 처분	용량 초과 주유 시 先지급거절 後지급	'19.1월

【 부정수급 방지방안 세부내용 】

① **원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자인 주유업자의 단속·처분 미흡

- 부정수급이 주유업자의 공모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체계가 미구축*

* △지자체 담당자의 타 업무 부담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에 한계, △화물차는 운행 상 타 지역 주유가 빈번하나, 화물차 관할 지자체에서 타 지역 주유소의 부정수급 공모 조사는 거의 불가능,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는 부정수급 공모 가능성이 농후하나 판매량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입증이 곤란

- 부정수급 공모 요구를 거절하기에는 주유업자의 처분도 낮은 수준*

* 부정수급 적발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1회 적발 6개월, 2회 적발 1년 거래정지)

▣ **개선**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 명의 인력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 합동점검체계를 구축 ('18.10월 중 MOU 체결 → '18.11월부터 합동점검 실시)

- 주유소의 POS시스템* 판매시간 및 판매량과, 국토부 FSMS**의 카드 결제시간 등 비교 시 부정수급 확인이 가능하므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 POS(Point of Sales) 시스템 :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 석유관리원 조사결과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78.1% 수준인 9,129개소에서 사용('17년)

** FSMS(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 유가보조금 지급·정산 지원, 주유내역·유가보조금액·부정수급 등을 관리

- 부정수급 가담·공모 주유업자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를 강화 (1회 적발 6개월, 2회 적발 1년 거래정지 → 1회 3년, 2회 이상 5년)

- 아울러,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원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느슨한 단속·처벌 체계

- 부정수급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적용중인 화물차의 주유탱크 용량 기준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부정수급 유혹 증대
 - * 주유탱크 용량은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800ℓ로 설정, 실제 용량은 380ℓ(최대 500ℓ)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지급정지 행정처분이 적발차수 기준*으로 운영되어 적발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속 수급
 - * 1차 적발 시에 6개월, 2차 적발 시는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국토부의 FSMS를 통해 의심거래내역을 추출하여 지자체에 통보 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 및 조치는 저조

▣ **개선** 부정수급 유혹이 차단되도록 단속·처벌 기준 강화

- 주유탱크 용량을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에서 차량 제작사와 차주 개별 확인을 통해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정비하여 실제 탱크 용량보다 초과 주유·부풀려 결제 시 부정수급 여부 즉시 확인 가능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현행 적발차수 기준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
 - * 단 1차례 적발되더라도,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6개월, 2회 이상이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하여 위반행위에 연동한 행정제재를 운영
-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18.8.14 개정)의 벌칙조항(제68조) 신설에 따라, '18. 11. 29일 이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의심거래 통보내역에 대한 조치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조사 착수, 3개월 내에 조사완료 유도

③ **원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발 및 처분체계의 한계

-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이 아닌 무자격 차량* 및 운전면허취소 등 수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차주**에 대한 지급차단 체계 부재

* (무자격 차량) '17년에 205건(7.1%)의 무자격 차량 부정수급 적발(89백만원)

** (무자격 차주) 운전면허증 취소 등에 따른 무자격 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례는 '17년도 2,893건 중 40.3% 수준인 1,166건(1,191백만원)으로 확인

-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카드결제 시 보조금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고 先지급 後조사·처분하여 위반자 지속 양산

▣ **개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 국토부 FSMS와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급자격 상실 시 유가 보조금 지급이 자동정지되고, 탱크용량 초과주유 시 先 지급거절·지자체에 소명 시 後지급 등 위반자 양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소

* 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 유가보조금 先지급·後조사 구조로 인해 다수의 위반자가 양산

· 최근 3년간('15~'17) 부정수급 처분사례 19,700건 중 탱크용량 초과 보조금 수급 10,707건(54.4%비중),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수급자격상실 수급 986건 등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방지방안 시행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 부정수급 예방체계가 구축되어 위반자 양산 및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고,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과중도 경감시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방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박형렬 사무관(☎044-201-39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산정방법

유종	구 분		세 액	비 고
경유	①현재 유류세 ('09.5.21.~)	교통·에너지·환경세	375.00원/ℓ	
		교육세	56.25원/ℓ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자동차세(주행)	97.50원/ℓ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소계>	528.75원/ℓ	
	②'01.6월 당시 유류세		△183.21원/ℓ	
	③유가보조금 지급단가(①-②)		345.54원/ℓ	
LPG 부탄	①현재 유류세 ('09.1.1.~)	개별소비세	160.82원/ℓ	275.000원/kg
		교육세	24.123원/ℓ	개별소비세의 15%
		판매부과금	36.423원/ℓ	약 36.423원/ℓ
		<소계>	221.36원/ℓ	원/kg × 0.5848 → 원/ℓ
	②'01.6월 당시 유류세		△23.39원/ℓ	
	③유가보조금 지급단가(①-②)		197.97원/ℓ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단위: ℓ/월, 원/월)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지급 기준량(경유)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경유	한도량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한도금액	236,004	350,378	534,550	767,099	932,958	1,057,007	1,488,586
LPG	한도량	1,024	1,521	2,320	-	-	-	-
	한도금액	202,721	301,112	459,290	-	-	-	-

□ 유가보조금 지급금액

(단위: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유가보조금	14,872	15,298	15,979	16,100	16,003	16,348	17,142	17,974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14~'17)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노선버스	발생건수	3	2	3	8
	부정수급액	6	504	35	8
택시	발생건수	290	366	664	760
	부정수급액	306	47	48	26
화물	발생건수	3,944	2,432	2,805	2,893
	부정수급액	3,728	5,030	5,650	6,369

□ **화물자동차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부정수급건	28,542	841	756	896	1,245	3,789	4,739	4,202	3,944	2,432	2,805	2,893
부정수급액	37,785	761	1,124	868	2,071	4,588	3,402	4,194	3,728	5,030	5,650	6,369

□ **화물자동차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 ('14~'17)

(단위 : 건, 백만원)

유형별	2014		2015		2016		2017	
	작발건수	결정액	작발건수	결정액	작발건수	결정액	작발건수	결정액
합계	3,944	3,728	2,432	5,030	2,805	5,650	2,893	6,369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1,126	1,727	507	1,025	631	1,639	269	1,595
외상 후 장부 기입, 차후에 카드로 일괄결제	1,377	440	418	204	445	430	834	605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결제	100	173	38	81	90	90	86	44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102	198	106	190	181	267	205	89
유사 경유(타품목, 등유, 휘발유 등) 주유 후 결제	145	419	152	747	84	262	117	112
이동판매(탱크로리 등)하는 유류구매 후 결제	102	441	84	983	51	669	4	3
법령위반으로 처분(사업정지, 운행정지 등)이후 결제, 의무보험미가입	397	136	855	199	820	545	1,110	320
기타(화물업무 종사자격 미소유자, 불법구조변경 등)	595	194	272	1,601	503	1,748	268	3,601

①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의 추진시점은?

아래 표와 같은 일정으로 관련 법령·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

세부 과제		조치사항	추진시기
◆ 단속체계 전환			
■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 합동점검체계 구축	MOU 체결, 현장 합동점검		'18.11월
■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류구매카드 거래 제외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19.上
■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19.下
◆ 단속·처벌 강화			
■ 주유탱크 용량을 차량별 실제 용량으로 개선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19.1월
■ 화물차주 부정수급 시 행정제재 강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19.下
■ 의심거래 조치관리 모니터링 체계 도입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19.1월
◆ 예방체계 구축			
■ 무자격자 보조금 지급 자동 정지체제 구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19.1월
■ 용량 초과 주유 시 선지급거절 後지급체제 도입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19.1월

한편, 의심거래 조치 관리 모니터링 체계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 석유관리원과의 업무협조 체계 구축시기, 현실적인 행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18. 11. 1일자 이후의 의심거래 사례부터 관리

② 단속·처벌 강화 부분 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벌 조치는 어떤 내용인지?

- 이미 국회 심의가 완료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18.8.14 개정)의 벌칙조항(제68조) 신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 법 시행일인 '18. 11. 29일 이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③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류구매카드 거래 제외를 '19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이유는?

- 주유업자 입장에서 POS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약 6~8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 화물차의 주유사례 발생 빈도, 주유량 등 영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필요한지, POS시스템 도입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해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고,
 -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POS시스템을 설치하는 회사와의 구매 및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19년 상반기로 시행시기 결정
- * POS(Point of Sales) 시스템 :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 석유관리원 조사결과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78.1% 수준인 9,129개소에서 사용('17년)